

인증서의 발급과 동시에 품질, 환경, 안전보건 및(또는)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체제에 대한 인증 획득에 대한 언급(홍보)을 하실 수 있으며, 인증마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올바른 인증사실 언급(홍보)과 인증마크 사용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 1. 일반사항

- (1)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인증마크 사용 및 인증사실을 언급 또는 홍보 할 수 있습니다.
- (2) 인증에 대한 홍보, 인증표시, 인증마크 등의 사용은 조직이 획득한 인증규격, 사업장, 인증범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인증유효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증이 정지 혹은 취소된 경우, 인증에 대한 홍보,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3) 인증기관 및/또는 인증시스템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2. 인증문구의 사용(인증에 대한 언급 및 인증 사실의 홍보)

- (1) 인증문구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인증된 고객의 식별 정보 (예: 브랜드나 회사명)
  - 경영시스템 유형 (예: 품질, 환경, 안전보건 또는 비즈니스 연속성) 및 해당하는 표준
  -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
- (2) “이 제품은 ISO 9001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 받은 공장에서 제조 되었다”라는 명확한 진술을 포함하여 인증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나, 제품에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 조 3 항에 따라 “세계 최초로 OO 부문에서 ISO 9001 / 14001 / 45001 / 22301 인증을 획득하였음”과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4) 인증획득에 대한 홍보는 인증사실에 대한 오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시: “OO 제품이 ISO 9001/14001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음.” 처럼 ISO 9001 인증등록조직이 개발 기능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홍보하면 안됩니다)
- (5) “ISO 로부터 인증 받은”, “ISO 가 인증한”, “ISO 인증”, “ISO 인증서”, “ISO 등록” 등의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6) 생산한 제품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품인증인 것처럼 오해되도록 홍보할 수 없습니다.
- (7)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홍보물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 (8)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과 사업장에 적용됨을 암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 (9)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 인증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인증서의 사용

- (1) 인증서는 인증 받은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하며, 인증등록조직에 의하여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2) 인증서는 복사하여 사용 가능하나, 복사본인 경우 복사본임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4. 인증마크의 사용

- (1) 인증마크는 Kiwa Korea 마크(인증기관 마크)와 인정기관(KAB)의 마크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마크는 인증범위 내에서 인증유효기간 동안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2) ISO (국제표준화기구)의 마크 및 IAF MLA 마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인증마크와 인정마크를 동시에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인증마크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나, 인정마크만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4) 인증표시는 원본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정마크의 크기는 최소한 가로 15mm, 세로 10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5) 인증마크는 원본 색상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6) 인증마크는 인정받은 분야와 관련이 있는 홍보물 등에 사용될 수 있으나,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한 경우

- 광고 또는 홍보물: 산업분류상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 명함, 교재, 편지지, 브로셔, 일반문서, 송장 등의 인쇄물 또는 제작물 또는 기타 광고 수단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인증마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제품: 제품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제품의 포장: 제품의 안전 또는 유통의 편의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포장으로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의 포장에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소비자가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제품포장에는 인증문구는 사용될 수 있으나, 인증마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동반되는 정보(accompanying information):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제품에 부착되는 유형 라벨(type label)이나 식별판(identification plates) 및 제품설명서는 제품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깃발, 건물, 차량,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예,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4. 인증마크 사용 예시

키와 코리아로부터 품질, 환경, 비즈니스 연속성 및(또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조직은 다음에서 제시된 형태로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마크(Kiwa Korea 마크)는 왼쪽에 위치하고, 인정마크(KAB 마크)는 오른쪽에 위치한다.

인증 받은 경영체제와 KAB 승인번호를 마크 아래쪽에 나란히 표기한다.

인증마크와 인정마크를 동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인증마크만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인정마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림 1] ISO 9001:2015 인증인 경우



[그림 2] ISO 14001:2015 인증인 경우



[그림 3] ISO 22301:2012 인증인 경우



[그림 4] ISO 45001:2018 인증인 경우



[그림 5] KS Q 9100:2018 인증인 경우



인증사실 홍보 및 인증마크 사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Kiwa Korea (키와 코리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397-0101, Fax: 02-3397-0105, [system@kiwa.kr](mailto:system@kiwa.kr))